

경호직 근무자의 업무능력 증대방안에 관한 고찰

김 창 호*

< 목 차 >

- I. 序 論
 - II. 警護의 概念 및 客體와 主體
 - III. 警護業務의 類型
 - IV. 社會的 變化에 따른 業務能力 增大方案
 - V. 結 論
- 참고문헌
ABSTRACT

I. 序 論

國際化·情報化·開放化로 치닫고 있는 現代社會는 많은 分野에서 多樣한 能力者를 要求하고 있다. 각 機關과 企業體에서는 多才 多能한 人力을 확보하고자 직접 大學이나 學院 등을 찾아 나서며 高級 人力을 채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産業革命이후 社會의 여러變化 즉, 産業化의 過程은 인간的 여러 側面에 많은 影響力을 끼치게 되었다. 産業化가 進展됨에 따라 인간에게는 편리함과 함께 삶의 質的 向上을 가져왔으며 반면에, 經濟的 成장은 財産의 保護와 身邊安全에 대한 認識을 급속도로 증가시키는 影響을 주었다. 이에 安全分野를 비롯한 Security 分野의 活性化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21세기 有望職種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추세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現代社會에서는 자기 자신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제3 자로부터의 保護가 필수 불가결한 要素로 作用하고 있으며, 이는 需要에 따라 身邊保護 要員 즉, 秘書나 警護人을 채용하기도 하고 業務의 效率性을 極大化하기 위한 役割

*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 교수

로서 隨行秘書 등을 채용하는 事例가 늘고 있다.¹⁾

글로벌시대는 國家와 國家間 그리고 企業과 企業, 個人과 個人 등의 社會 전반적인 民間交流가 활발히 전개되는 시점에서 經濟的, 文化的, 社會的 理念과 差異에 따른 相互 利害關係를 構成하는데 여러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媒介 役割로서 身邊保護役割 차원을 넘어서 警護人的 또 다른 다각적인 役割이 增大되고 있다. 이처럼 現代社會는 社會전반 여러분야에 더불어 다양한 能力을 요구해가는 業務 體制의 形態로 形成되어 가고 있는 形態이며 특히, 警護業務를 隨行하는 過程에서도 이러한 1인 다기능의 時代가 요구되는바 본 論文에서는 警護人的 社會的인지 變化에 따른 요구되는 資質과 適應方案에 대하여 研究의 焦點을 두고 論하고자 한다.

身邊保護要員 즉, 警護人도 단순 身邊保護的인 측면에서 더 나아가 被 警護人(警護 對象者)을 輔佐하는데 있어 對象者의 生活과 業務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기 위한 다각적 인 能力과 資質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II. 경호의 개념 및 의의

1. 警護의 概念 및 意義

警護의 概念 및 意義를 크게 나누면, 각 類型別로인 경호대상자가 警護의 客體가 되며 이에 대한 경호대상자에게 제공되는 業務 즉, 주관하는 機關 및 部署에 따른 主體로 나누어질 수 있다.

實質的 意味의 警護概念은 警護의 概念을 對象이 누구냐에 따른 本質的·理論的인 立場에서 理解한 것이다.²⁾ 이는 學問的인 側面에서 考察된 概念으로 警護라는 用語는 본래 公機關에서 비롯된 것으로 大統領 및 政府 重要要人이나 國內에 滯在中인 外國 要人 등에 身邊에 危害가 미치는 것이 國家 治安에 艱難이 있는者로 定意하고 있다.

1) 安全欲求는 마슬로우(A.H.Maslow)가 주장하는 人間欲求 5단계중 하나이다. 이는 生理的 欲求, 安全 欲求, 社會的 欲求, 尊敬의 欲求, 自我實現의 欲求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現代社會에서는 자기 財產과 生命에 대한 欲求의 範圍가 점차 增大되고 있다.

2) 金杜炫, 「警護學概論」, 白山出版社, 2001, p.26-31.

그 要因으로는 政治的 事案으로 인한 테러나 暗殺 등 人爲的인 危害나 火災 및 洪水 등과 같은 自然發生的인 危害 등으로부터 그 身邊을 지키고 安全을 확보하기 위한 作用을 말한다. 한편 警察機關에서의 警護의 正義는 被 警護者의 身邊에 대하여 直接 또는 間接적으로 加害지는 危害를 미연에 防止하고 除去하여 그의 安全을 圖謀하는 警察活動 또는 “被 警護者의 身邊을 각종 危害로부터 境界 및 豫防, 安全을 위한 警備活動이다” 라고 正義하고 있다.³⁾ 一般的으로 私警護에 관련해서는 被警護人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고 안정된 生活을 영위할 수 있도록 圖謀하는 安全對策 작용이라고 明明할 수 있다.

結論적으로 正義하면 警護對象者에게 接近되는 모든 危害要素에 대하여 사용가능한 모든 手段과 方法을 講究하여 危害 要因을 사전에 豫防 및 境界하고 安全한 生活을 영위할 수 있도록 圖謀하는 제반작용이라고 正義 내려질 수 있다.⁴⁾

形式的 意味는 前者의 立場과는 對比되는 概念으로 本質的 및 理論的 概念에서가 아니라 現實的인 警護機關 즉, 主體機關을 基準으로 정립된 概念이라고 할 수 있다.⁵⁾ 그러므로 形式的 意味의 概念은 警護機關에 의해 행하여지는 모든 作用을 말하는 것과 같다. 形式的 警護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봐야하느냐 하는 것은 오직 그 나라의 立1法政策에 따라 다르다. 韓國에 있어서는 大統領의 警護를 담당하는 大統領警護室과 주요 國內外 要人의 警護를 담당하는 警察機關이 그 性質如何를 불문하고 모두 形式的 意味에 해당한다. 또한 直·間接 유관기관으로서 國家情報員, 檢察廳, 國家非常對策委員會, 國會警備隊, 空港, 港灣 등이 관련된 유관기관의 범주에 속한다. 日本과 英國의 경우에는 內閣制의 性格에 따라 警察이 警護를 擔當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警護의 主體機關이 어디냐에 따라 護衛의 대상이 달라지고 性格과 特性 그리고 警護의 수준이 달라진다. 具體적으로 다음의 客體와 主體로 나누어진다.

2. 客體와 主體

前者에서의 같이 客體라 함은 警護關係에서 警護主體의 相對方 즉, 警護對象者를 警

3) 金鳳義 외 1, 警備實務(一般警備, 作戰), 政文出版社, 1994, p.67-71

4) 李相哲, 「警護方法論」, 서울: 弘經出版社, 1998, p.3-7

5) 金杜炫, 앞의 글, 재인용, p.27-31

護客體라 일컫는다. 警護客體로는 크게 나누어 公警護 對象인 獨立體制의 大統領, 君主制의 國王, 수상, 國務總理, 國會議長, 大法院長, 각부 長官及 등이 對象이 되며⁶⁾ 私設 警護機關의 對象으로는 企業人, 政治人, 演藝人 등 일반 民間고객으로 區分할 수 있다. 여기서 企業人이라 함은, 그룹사의 會長의 지위에 있는 者이거나 代表理事, 常務理事, 專務, 部長 등으로 나열할 수 있으며 이들은 會社의 運營상 또는 株主關聯된 問題 등 效率的인 運營을 위한 必修 要件으로 警護人을 重要 業務者로 認識하고 있다. 政治人으로는 각 政堂代表와 最高委員 등 政治制度상 일정한 位置에 있는 者로서 職業的으로 國家權力의 運營에 중사하는 사람을 말할 수 있다. 즉, 요약 정리하면 黨에서의 重要 影響力을 行事하는 人事로 正義할 수 있다. 演藝人이라 함은 大衆的인 음악, 무용, 영화, 연극 등 社會的 認知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職業別로는 배우, 가수, 코미디언 등을 통틀어 演藝界로 일컬어질 수 있다. 이들은 演藝人이라는 特定한 職業 때문에 많은 聽衆 앞에 설 期會가 많으며 熱狂的인 팬들의 奇襲的인 接近이 빈번하다. 대표적인 犯罪로서 新種犯罪인 스토킹犯罪을 예를 들 수 있다. 最近에 急增하고 있는 이 新種犯罪은 法·制度的 藏置가 絶실히 要求되고 있으나 議員立法 上정 과정에서 初期에는 國會 李其文 議員이, 그리고 金兵太 議員 외 21인이 強力하게 要求해 오다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약 3년간 溪流하다가 結局에는 立法化되지는 못했다. 스토킹犯罪은 相對의 의사에 반하여 相對方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종의 人權侵害犯罪로 明明하여 질 수 있다.⁷⁾ 다음으로는 앞서 언급한 內用들처럼 政治人, 演藝人들처럼 다소 著名人士가 아니더라도 犯罪의 威脅에 시달리는 一般人들이 우리 社會 全般에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實像 警護業界의 主要市場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抽稅이다. 教授, 醫師, 辯護士 등 專門職業을 가진 部類와 獨身者나 學校暴力의 威脅으로부터 子女를 保護하려는 行태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 一般人也 他 地域이나 外國에 訪問시 風習, 地理, 言語疏通 등의 安全上의 問題를 들어 가이드 및 身邊保護 要請을 하는 등 매우 다양하게 자리잡아 가고 있는 抽稅에 이르고 있다.

자세한 內用은 제3장 警護業務의 類型과 特徵에서 보다 자세하게 說明하기로 한다.

警護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積極的으로 일정한 警護作用을 主導的으로 실시하는

6) 金杜炫, 앞의 글, 재인용, p.250-262

7) 金平洙, 「Stalking犯罪의 警護의 對應方案에 관한 考察」, 龍仁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1.

機關 및 付書를 가르켜 警護主體라고 한다. 즉, 警護를 直接 提供하는 警護組織을 말한다. 본래적인 警護主體로는 國家(警護室, 警察) 및 公共團體(地方警察)를 들 수 있으며, 私人 또는 私法人인 에게도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警護權이 委任되는 境遇도 있으며, 그 範圍내에서 警護主體가 된다. 예를 들면, 外國의 主要人事가 國內의 公共業務를 隨行하기 위한 國內 體制중인 境遇이거나 대표적인 境遇는 지난 ASEM會議 期間에는 公警護의 人力副族으로 인한 宿所警護시 각 호텔에서는 身邊保護要員을 增加시킨 境遇도 있다. 이와 같이 警護主體는 警護對象이 누구냐에 따라 國家元首 警護機關, 수상 등 警護機關, 民間人 警護機關(團體)등으로 區分할 수 있을 것이다. 警護機關이 軍과 混星組織으로 관리될 때에는 軍警察이 擔當하고 責任者의 職級은 높은 편으로 장성급이나 차관급이다. 警護機關의 運營이 軍의 獨自運營體制에 의한 境遇도 있는데, 普通기무사령부 경호대의 大領 내지 準張급이 責任者로서 警護責任을 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境遇 通常적으로 大統領 警護室長의 거의 모든 權限에 속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主體로서의 警護機關의 警護要員은 一般公務員, 軍人(憲兵), 警察, 民間人 등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警護要員의 수를 보면 많게는 3,000명, 적게는 30여명의 警護人力을 보유하고 있는 國家도 있다.⁸⁾

Ⅲ. 경호업무의 유형

警護人的 業務는 所屬 組織의 形態와 特性에 따라 多樣하게 나눌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로는 組織體의 性格과 規模의 差異를 들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떠한 기준으로 分類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본 내용에서는 다음과 같은 組織形態, 業務機能, 專門分野 등의 세 가지의 分類 基準으로 열거를 해보도록 한다.⁹⁾¹⁰⁾ 이 基準의 根據 提示는 私的機關 業務 分類로써 筆者의 個人的인 意見을 提示하는 것으로 既存 先行研究와는 다소 差異가 있을 수 있다.

8) 金杜炫, 「警護學概論」, 白山出版社, 2001, p.208-249.

9) 金基玉, 「秘書理論·實務·入門」, 政經社, pp.13-16 참고.

10) 유연숙·최애경, 「秘書學概論」, 博英社 1992, p.17참고.

1. 組織形態에 따른 分類

1) 個人警護人(Man to man Guard)

特定の 1인 被 警護對象者를 한 警護人이 전속적으로 身邊保護 및 輔佐業務를 하는 形態이다. 特徵的으로, 警護人은 警護對象者의 直接命令을 받아 業務를 隨行하기 때문에 業務範圍가 明確하다. 이와 같은 個人警護人은 잡무를 포함한 警護對象者의 거의 모든 事안들이 業務의 對象이 된다. 주로 企業體의 最高經營者 즉, 그룹 會長이나 代表理事 및 常務理事, 專務 등의 人事에 소속하는 경우가 많으며 근래에는 벤처업체의 왕성한 活動으로 個人警護人의 需要가 늘고 있는 추세에 이르고 있다.

2) 警護科의 警護人(Group Guard)

組織體의 警護人은 秘書科의 警護人 또는 전문부서에 소속되어 職員 및 課員으로서 業務를 隨行하는 形態로 命令系統에는 그 소속장의 指示와 命令을 받는다. 이러한 形態의 警護人은 所屬組織의 形態와 業務分場에 따라 다소 差異가 있으나 크게 3가지로 나누어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팀形을 들 수 있다.

要員 個個人이 特定の 1인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고, 秘書科 소속의 警護人이나 獨立的인 警護科를 중심으로 그 組織의 最高經營者 즉, 會長이나 代表理事의 業務를 隨行하는 形態이다. 이는 業務를 함에 있어서 1인, 2인, 3인 등의 각 1조, 2조, 3조 등으로 구분되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그리고 비교적 규모가 큰 組織體에는 주·야 교대적 業務를 遂行하기도 한다. 그러나 組織의 特性과 性向에 따라 內容別로 각기 다양한 方法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 節充形을 들 수 있다.

警護科를 중심으로 전체가 警護對象者의 身邊保護業務를 계속 遂行하며 각기 擔當하는 對象者가 정해져 있는 形態이다. 이는 그룹에서 系列社 관련 理事급에 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個人形을 들 수 있다.

警護人 個個人이 제각기 特定 警護對象者에게 配屬되어 警護대상자의 身邊保護業務

를 모두 담당하는 形態이다. 특이한 점은 秘書室 소속 警護科이거나 獨立的인 警護科의 要員이면서 業務는 1인 警護대상자의 業務를 맡는 形態이다. 이 경우에는 警護科長이나 部長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重要사항에 대하여 秘書科長의 命令을 받거나 報告 등의 責任도 따르게 된다.

3) 警護秘書¹¹⁾

본연의 任務는 身邊保護가 주 業務대상이지만 對象者の 業務의 極大化를 위하여 秘書的 業務도 병행하는 意味의 形態라고 할 수가 있다. 이는 벤처 企業體나 비교적 소규모 業體에서 警護의 秘書概念의 業務能力을 요구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IT産業과 對外貿易의 活性化에 따른 特性的 業務需要는 근래에 들어 警護業界의 많은 變化를 촉진하는 重要한 要因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辭典的 定義로는 아직까지 命名되고 있지 않으나 業界에서는 公同연히 사용되어 지고 있고, 따라서 研究자가 임의로 分類하였다.

4) Free 警護人

아직까지 警護業界의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警護人들이 바로 Free 形態의 警護人들이다. 이들은 全文에서 나열한 警護人들과는 다소 差異가 있다. 소속이나 일정한 業務가 따로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다양한 社會的 需要에 따른 多樣한 業務를 요구받기도 한다. 수익면에서는 크게 두 部類로 나눌 수 있다. 警護人의 認知度에 따라 高所得이 보장되기도 하고 반대로 株主 關聯業務나 단순 安全 形態의 업무를 하는 警護人들은 相對的으로 賃金面에서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警護人 主要認知度 평가에서는 能力을 고려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專門大學 이상의 大學 關聯學科를 나왔거나 또는 專門機關에서 教育을 받았는가에 따른 주요 평가방법으로 분석되어 질 수도 있다. 그러나 身體的인 조건이나 더 나아가 儀典과 情報能力 등을 갖춘 要員이 더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5) 專門機關 및 業體의 소속 警護人

11) 권수미, 「警護員의 秘書機能 향상 方案」, 龍仁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2

실상 警護業界의 區分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면 個人 전속警護人, 會社에 고용된 警護人, 그리고 警護專門業體에 등록되어 수요 발생시 業務를 遂行하는 業體 警護人으로 나눌 수 있다. 앞으로의 展望과 추세는 주로 個人 전속 警護體制가 될 것으로 전망 될 수 있다. 業體의 警護人들은 불규칙한 수주와 낮은 임금 그리고 고용의 不安定性이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組織의 열세와 열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게 현 실정이다. 그 內面에는 실제 契約상의 賃金 策定과 警護人들이 받는 賃金에는 많은 差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認識되고 있다. 그 만큼 組織內에서 걸러지는 過程이 심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法的·制度的 장치가 시급히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警護대상자의 側面에서도 많은 認識 差異를 느낄 수가 있다. 個人 警護人의 경우 대상자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業務에 能率과 效率性이 極大化되어 소속감과 責任이 따르는 業務임을 감안하면, 필요시마다 고용하는 限時制 警護人은 警護對象者로 하여금 情報의 漏出이나 業務의 露出 등 프라이버시로부터 어느 정도 制限을 받을 수 있는 脆弱性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반드시 業體의 所屬 警護員들의 資質이 부족하다는 論理는 아니다. 다만 社會的 추세를 고려한 것이며, 앞으로의 社會的 추세 역시 中小企業, 小企業體 體制로 社會가 전환 될 것임을 감안하면 業體의 警護員보다는 能力과 資質을 갖추고 구비한 個人 警護員이 더 나은 대우와 條件을 제시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業務機能에 따른 分類

企業組織은 命令系統을 철저히 하기 위한 系層分化和 業務를 效率的·有機的으로 進行해 나가기 위한 業務分化的 二元的 組織으로 구성되어 있다.¹²⁾ 警護員의 類型 또한 組織의 分化에 따라 警護人의 技能이 다소 달라질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業務技能에 따라 어떤 技能을 遂行하느냐에 따라 區分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1) 警護秘書

一般的으로 組織의 長이나 最高經營人이 主 警護對象이 되기도 하며 身邊保護의인

12) 유연숙, 최애경, 「秘書學概論」, 法文社, 1992, p.114.

業務와 함께 秘書的인 業務의 役割이다. 이 類型的인 警護人은 高度의 專門知識이나 經驗보다는 1차적으로 身邊保護能力 및 외모나 行動力이 중요시된다. 보통 이 職務를 隨行하는 사람은 警護對象을 安全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運轉能力이 要求되기도 하며 실제 運轉役割도 겸하고 있는 것이 통상 慣例的이다. 또한 警護對象者를 近接에서 保護하기 때문에 많은 意思傳達이 이루어진다. 때문에 警護對象의 취향이나 性格 및 特性들을 잘 파악하여 業務의 效率을 極大化하기 위한 客觀的인 意思表現 등의 助言이나 勞力이 필요하다.

2) 輔佐役 警護人

警護對象의 실질 代辯人格인 參謀로서 계선 組織을 돕는 일을 관장한다. 이러한 形態로는 大統領 秘書室長, 警護處長, 警護部長, 警護科長 또는 公·私 組織의 長의 警護 關聯 室長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경우 警護人은 主要政策이나 經營計劃 및 意思決定 過程에 참여하는 警護직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3) 國家 流官機關의 警護人

國家情報員이나 檢察 및 警察의 警護關聯部署는 直接的인 警護의 概念인 業務 役割과는 다소 差異가 있으나 間接活動으로서 警護業務를 돕고 있으므로 流官機關으로서 警護機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II의1) 形式的 意味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專門分野에 따른 分類

教授, 醫師, 辯護士와 같은 각자의 專門分野가 있는 것처럼 警護業務도 分野別로 專門化가 되어가는 樣相을 보이고 있다. 警護人으로서 갖추어야 할 身邊保護能力은 基本事項이지만 組織의 性格이나 業務內容에 따라 警護 영역도 다음과 같이 크게 나누어 分類해 보고자 한다.

1) 公機關 警護人

一般的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大統領警護室의 警護人들이 代表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警察의 警護關聯科와 總理, 國會議長, 憲法裁判所長, 등 각 長官급의 隨行 警護人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企業體 警護人

大企業 및 中·小企業體에서 근무하는 警護人을 지칭한다. 會社의 全般的인 理解와 더불어 業務와 관련된 知識과 能力을 필요로 한다. 통상 隨行 秘書로 일컬어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名名화 되지는 않았지만 警護秘書로 불려지고 있다. 이들의 主 業務는 통상 警護對象의 身邊과 관련된 安全상의 役割이며 附隨的으로 事務的인 技術이나 業務의 補助役割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警護人들은 각종 外國語에 능통해야 能力을 認定받기도 한다.

3) 政治界 警護人

公機關 警護人과는 많은 類似點을 지니고 있다. 좀더 세분하게 區分하자면 國會議員, 각 地方의 地域議員, 長官급 人事, 中央黨의 高位幹部 및 政策 結晶子나 最高委員들이 이에 해당한다. 요즘에는 地自體의 정착화 단계로 團體長의 身邊保護가 증가할 것으로 展望된다. 이에따라 政策的 마인드가 要求되고 事務能力을 비롯한 각종 情報能力이 要求된다고 할 수 있다.

4) 宗教界 警護人

宗教團體의 規模가 커지면서 그 團體의 業務別 細分化가 要求되고 있다. 宗教指導者의 對外活動을 위한 輔佐 및 身邊保護와 宗教團體의 安定性을 기하기 위한 役割로서 警護人의 必要性이 대두되며 아울러, 근래에 敎皇이 暗殺者로부터 攻擊을 받은 事件을 비롯하여 각 宗派간의 異見對立 및 宗派와 宗派간의 分爭의 對象도 이 역시 身邊保護의 必要性을 認識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國內에는 그리 많은 수의 宗教界 警護人은 없는 추세이다.

5) 醫療界 警護人

綜合病院이나 準 綜合病院, 個人病院에서도 警護人의 必要性이 認識되고 있다. 各種

醫療事故나 病院을 상대로 不滿을 가진 자들에 대한 테러가 主要因으로 자리잡고 있다. 때문에 病院에서는 1인 2역할의 技能을 요하기도 한다. 그러나 醫療 事故나 分爭이 不規則하고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로 평상시 病院의 業務를 主 業務로 하는 경우가 많다. 주 警護對象은 院長이나 醫師이다. 이러한 警護人은 醫學의 專門的 知識보다는 行政的 資質을 구비하여 病院의 全般的인 理解와 함께 管理者 能力을 길러 能率을 最大化하여야 할 것이다.

6) 法曹界 警護人

個人 法律事務所나 辯護士 事務所에서도 訴訟의 分爭에 따른 危險要素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法院이나 檢察에서도 事件의 處理過程에서 발생될 수 있는 危險要素 역시 豫測하기 힘들다. 보통 대상자 자신이 危險要素를 감지하는 시점에 專門警護業體에 依頼하여 保護를 받기도 하는데 이 分野의 警護人은 그리 많지가 않다.

IV. 사회적 변화에 따른 업무능력 증대방안

時代와 場所가 다르고, 業務와 관련된 內容이 다양해지면 役割者의 任務도 당연 바뀌어야 할 理致인 것이다. 社會的인 지 즉, 時代的 變化가 주는 影響은 고유의 業務 영역이 점차 바뀌거나 變形되어가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하여질 수 있다. 이와 함께 警護 業界의 꾸준한 勞力과 발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方案에 대한 焦點이 바로 이것이다. 大學과 專門警護機關, 業務別 役割에 따른 資質, 個人的 要件, 警護人 자신이나 대상자의 認識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私的分野에 必要로 할 수 있는 部分에 대해 列舉하면 다음과 같다.

1. 大學 및 專門機關에서의 役割

먼저 警護人을 배출하는 大學 및 專門大學과 專門機關에서는 警護와 관련된 敎科目이 폭넓게 編成되어 있지만 武道的인 側面의 認識이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 물론, 警護的 偶發狀況에서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武道적인 側面이지만 그

러나 이제는 警護人의 보다 專門的인 役割과 技能에 대한 강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國際化 정세속에서 그리고 情報通信의 發達로 인한 情報化 社會의 進展에 있어서 警護人은 企業, 事務技術(office technology) 등 다양화된 業務에 대한 役割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警護教育 教科課程은 實務에 진출하였을 때 變化된 새로운 役割을 擔當할 수 있는 資質을 갖추어 주며 계속 變化되는 社會에서 자신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專門人 補修教育體制로서 平生能力을 함양시켜 주어야 한다.

警護職의 學問的 및 知識의 基盤을 살펴보면 他 專門職과 比較하여 볼 때 知識이나 學問的 體系가 아직까지는 미흡함이 사실이다. 變化되는 社會, 經營, 警護環境에 能動的으로 對處할 수 있도록 기존의 社會科學 또는 다양한 現象에 대한 警護學의 접근,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警護學과 관련있는 分野로서 秘書學 側面에서는, 學問分野를 컴퓨터, 情報通信, 情報 등의 分野를 통합하여 事務情報處理 및 管理, 事務管理, 그리고 行政分野로 까지 넓혀 理論的 基盤을 構築해야 한다고 言及하고 있다.¹³⁾ 또한 警護의 特殊性을 감안하여 볼 때 警護的 知識 基盤과 함께 要求되는 部分이 體力과 輔佐能力이므로 이에대한 專門教育機關의 活性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警護人의 效率的 業務를 遂行하기 위한 警護의 理論的 部分과 함께 事務管理, 政策補佐, 情報, 儀典, 人間關係, 情報通信 등의 教科目 活性化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1세기는 知識 情報化 社會이다. 變化된 社會에 보다 積極的인 業務를 위한 關係機關과 學校教育의 役割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2. 業務役割에 따른 資質

警護人은 先驅的이고 創意的이며 能率的이고 보다 客觀的이며, 職務에 긍지를 가지고 業務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對象者의 私生活와 관련되어서는 保安과 保護가 絕對的이어야 한다. 相對的으로 他 職責에 비하여 비교적 그 影響力이 크기 때문에 公的 私的 모든 部分에 대하여 정확하고 公正한 職務를 遂行하여야 한다. 警護人은 이와같은 자세가 필요하며, 筆者의 個人的인 生角을 概略的으로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13) 최애경, 「秘書職 專門化를 위한 모색」, 1998참고.

첫째, 業務補助의 役割을 모색 할 수 있다.

警護人은 警護대상자의 業務를 補助하는 補佐의 役割을 遂行한다. 警護對象者가 業務를 遂行하는데 필요한 각종 文書나 書類 등과 관련하여 補佐役割을 하고, 警護對象과 關係 있는 사람들의 一定이나 서브計劃을 企劃하고, 通信媒體를 통하여 각 部署나 타 機關 및 業體와의 業務關係 등의 조율이나 補佐의 役割이 요구된다. 보다 더 能率的인 業務를 위해서는 고유영역인 警護業務를 포함한 이러한 能力들이 必要하다 할 것이다.

둘째, 業務分割의 役割을 모색 할 수 있다.

警護對象으로 하여금 業務의 能率化를 조성하는 役割을 遂行하기도 하는데 遂行警護人의 경우 警護對象者와의 密接한 關係가 있다. 警護대상자의 活動範圍가 크면 클수록 被 警護人은 遂行 警護人에게 自身の 業務와 時間을 分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유능한 警護人은 被 警護人이 本然의 任務를 충실하게 遂行할 수 있도록 役割分割이 이루어져야 하고 業務의 融通性을 발휘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다.

셋째, 意思決定의 役割을 모색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警護對象의 의중을 把握하고 意思決定에 자신의 役割이 요구된다. 때문에 警護人은 警護대상자로 하여금 정확한 判斷으로 意思決定을 할 수 있도록 助言 한다. 警護對象者와 관련하여 決定을 하여야 하는 境遇가 많다. 물론, 重要事案에 대하여는 關聯 부서를 통해 전달되고 把握되지만 日常的인 事案이나 狀況判斷은 혼자서 決定하는 境遇가 많다. 이처럼 側近에서 補佐하는 警護人의 의사가 重要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냉철한 判斷力과 情報力을 바탕으로 多角的인 사고가 要求된다.

넷째, 代辯人格으로 모색 할 수 있다.

警護人은 警護對象者의 地位 즉, 人格과 品位와도 直結된다. 특히, 警護人의 勞力如何에 따라 警護對象者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그렇지 않느냐가 左右되는 境遇도 있다.

이와같이 被 警護人의 對外的인 이미지 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警護對象者로 하여금 品位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個人的 要件

時代的 變化에 따른 警護業務를 遂行하는 過程에서도 被 警護人의 業務와 生活에 直·間接的으로 補佐하는 活動을 해야 한다. 따라서 警護人 자신은 많은 分野에서의 資質과 能力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武道能力이다. 警護人은 被 警護人에 대한 財産과 身邊을 保護하기 위한 基本的인 要件으로 높은 武道能力이 要求된다고 할 수 있다. 跆拳道, 柔道, 合氣道, 劍道, 特攻武術, 택견, 護身術, 用武道 등 다양한 武道를 익힘으로써 非常事態時 즉, 警護의 偶發狀況時 卽刻的이고 安全한 對處를 위한 責任이 要求되므로 모든 分野의 각 武道別 장점을 自身으로 것으로 소화시켜야 한다.

둘째,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能力이다. 당연 組織內에서의 合理的인 意思疏通은 基本的인 資質이다. 그리고 國際化·開放化 時代에 따른 警護人의 회화 및 通譯能力의 比重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미 世界는 國家間의 障壁이 무너진지 오래다. 따라서 국제어인 英語와 주변국의 言語(日本語, 中國語) 등을 익힘으로써 보다 더 積極的인 業務 遂行을 위한 役割이 필요하다.

셋째, 事務能力이다. 실제 警護業務는 秘書的 業務와도 상당한 關聯性이 있다. 따라서 文書作成, 엑셀, 파워포인트 등 事務器機에 대한 능숙한 能力들이 요구된다.

넷째, 스포츠 및 레포츠 能力이다. 警護人은 身邊保護를 위한 武道能力과 함께 警護 對象者의 生活와 密接한 관련이 있는 스포츠와 레포츠 能力들이 필요하다. 골프, 수영, 승마, 테니스, 스쿼시, 스키, 스킨스쿠버, 보디빌딩, 게이트볼 등의 補助役割을 위한 專門家 資質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섯째, 警護運轉能力이다. 警護人은 警護任務시 단순 運轉能力의 틀에서 벗어나 防禦警護運轉 概念에서의 役割이 요구된다. 따라서 모든 車輛을 直·間接的인 潛在的 危害要素로 보고 安全確報, 交通規則 準數 등과 같은 安全運轉에 힘써야 한다.¹⁴⁾ 아울러, 防禦運轉 訓練을 돕는 方法으로 往復달리기, 서전트점프(Sergeant jump), 계단오르기 등과 같은 訓練을 함으로써 瞬間的인 判斷力과 순발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

14) 交通管理工團에서는 運轉者의 安全運轉을 위한 實力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Security業種과 관련있는 大企業 및 比較的 規模가 큰 業體에서는 車輛과 관련(S-1, SOK, Caps 등의 對處要員)하여 業務를 하는 職員에게는 반드시 資格을 갖추도록 要求하고 있다.

하다.

이상과 같이 概略的인 個人的 要件으로 5가지의 필요한 資質들을 나열하였다. 이러한 資質들을 갖추므로써 警護人 자신은 물론 效率的인 業務遂行을 위한 役割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警護人의 意識錢還

과거 軍事政權에서 政治的으로 많은 影響力을 행사했던 警護에 대한 社會認識과 소위 組織的이다라는 社會的으로 경직된 감정과 固定觀念을 달리하고 警護人도 專門人 이 아니면 業務를 遂行할 수 없다라는 認識을 심기 위해서는 警護職에 在職하고 있는 者들의 積極的인 사고와 활동만이 衣食錢還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본다. 몇 가지로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警護人은 警護대상자의 곁에서 身邊保護와 情報 그리고 意思決定에 필요한 助言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부단한 자기 노력을 해야 하며, 警護學을 專攻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욱더 組織의 特性에 맞는 教育의 必要性을 깨달아 위의 3에 提示한 不斷한 自己開發과 勞力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現職에 進出하면 警護關聯學과 專攻이 아닌 他 學科 出身이나 高卒警護人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警護關聯學科 專攻出身이 아닌 사람도 警護職을 遂行할 수 있다'고 하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한 불만을 갖지 말고 警護學 專攻者가 뭔가 다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警護關聯學科 出身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認識을 만들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隨行秘書 또는 隨行警護員으로 채용되는 경우 所屬企業體나 公·私에 대한 남다른 研究로 그 組織에 적합한 專門知識 습득에 노력하여야 한다. 警護學을 教育받았더라도 一般的인 警護員으로서의 專門者이며, 때문에 각 企業體의 特性과 성향 그리고 業務에 대한 知識은 자기자신의 몫이 되므로, 現場에서의 適應을 위해서는 부단한 自己開發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警護人은 勤務하는 組織體에서 주 業務인 身邊保護任務가 主 業務이다. 때문에 被 警護人으로부터의 단순한 概念으로의 認識概念이 되는 경우가 많다. 警護人도

多角的인 側面에 資質들을 習得하여 그 외의 高級 人力으로서의 活用面을 보여줄 기회를 찾아야 하며, IV의 3)에서 言及한 것처럼 그에 따른 끊임없는 자기 開發로서 專門性을 認定받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警護業務가 단순업무의 範疇에서 脫皮하여 多樣한 業務를 처리할 수 있는 能力과 自己自身の 意識轉換이 絶對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V. 結 論

現代社會는, 高度의 知能化·專門化·競爭化 속에 企業이나 公共組織은 치열한 角逐戰을 벌이며 生存競爭에서 살아남기 위한 부단한 手段과 方法을 講究하고 있다. 이처럼 急變하는 現代社會에서는 警護業務도 더 이상 단순적인 業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부단히 자기 開發과 다양한 能力을 갖추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벤처업계를 중심으로 多角的인 사고와 知識, 그리고 能力들을 보유한 人才를 요구해오는 추세에 이르고 있다. 즉, 1인 多技能 時代를 맞이한 것이다.

現職에 종사하고 있는 警護人들도 꾸준한 自己開發에 힘써야 하며 단순한 技能과 業務위주에서 벗어나 專門知識에 대한 理論的 知識習得으로 自己發展을 圖謀해야 하며, 大學을 포함한 警護人 養成기관에서는 단순 技能爲主의 警護人 養成으로 企業組織에서 요구하는 兩的인 人力의 수요에 맞추려 하지말고 産業社會가 요구하는 專門職으로써의 警護職에 대한 認識이 정착되도록 技能爲主의 單편적 教科內容에서 탈피한 理念과 知識 등 技術을 겸비한 教科內容으로 定着化 되어야 한다. 단순 機能 爲主의 教育은 高等學校나 私設學院 또는 專門警護機關에서의 活用으로 대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業務役割에 따른 補助·分割·意思決定·代辯人格으로서의 資質을 갖추고 個人的으로는 武道能力, 커뮤니케이션 能力, 事務能力, 스포츠 및 레포츠 能力, 警護運轉能力, 政策 및 輔佐能力, 情報 및 分析力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警護人 個個人的 認識의 轉環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겠다.

社會的 變化에 따른 警護人의 適應方案의 一環으로 이상과 같이 나열하였다. 時代的 變化에 따른 準備된 警護人으로써 그리고 資質을 함양한 警護人의 자세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 김기옥(1997), 『秘書理論.實務.入門』, 政經社.
 김두현(2001), 『警護學概論』, 白山出版社.
 김식현(1998), 『人事管理論』, 貿易經營社.
 김봉의 외(1994), 『警備實務(一般警備, 作戰)』, 政文出版社.
 신유근(1987), 『組織環境論』, 多産出版.
 유연숙·최애경(1992), 『秘書學概論』, 博英社.
 이상철(1998), 『警護方法論』, 서울: 弘經出版社.
 ——(2000), 『警護實務』, 서울: 弘經出版社.
 이학중(1989), 『기업문화론·理論·技法·事例研究』, 法文社.

Alderfer, C P(1992), Existence, Relatedness and Growth Human Needs in Organizational Setting, N Y, The Three Press

<http://www.changbo.co.kr/>

<http://www.posteech.ac.kr/~dasol/work/tk/main.html>

<http://www.webpoint.co.kr/at~international/>

<http://www.joeun.com/>

<http://www.caps.co.kr/main.html>

<http://www.s1.co.kr:2000>

<http://www.scourt.go.kr>

Abstract

A Study on a Plan for Adaptation according to the Change of a Bodyguard's Social Cognition

Kim, Chang-Ho

In the modern society, the enterprises or the public organization have devised consistent means and methods with keen competition in high intelligence, high specialization and high competition for surviving in the struggle for existence. In the rapidly changing modern society like that, guard services are not free any more in the simple business. It will be survived only with consistent self-development and various abilities. Recently, it is on a trend that the enterprise including venture business requires the man of ability having many-sided thought, knowledge and capacity. That is, the era of a man with multi-function has come.

The guards engaged in their present posts have to make efforts self-development consistently. And they have to work for self-development with theoretical knowledge acquirement about the expert knowledge escaping from simple function and business. The constitution including universities that train the guard should not adjust to the demand of quantitative manpower required in the enterprise organization with the training of the guard with simple functions only. It needs settlement as a curriculum with technology like ideology and knowledge breaking from short curriculum centered on function only in order to come to stay the recognition about guard services as expert services that the industrial society requires. The education centered on simple function should be replaced in the use of a high school, private academy and special guard institution.

In addition, it requires a quality as the auxiliary, division, decision-making and

spokesman according to the business role. Also, it requires the martial arts capacity, the communicative capacity, the sports or reports capacity, the guard driving capacity, the policy and assistant capacity and the information and analysis capacity, etc in individual.

Lastly, it needs each guard's change of cognition most of all.

As part of the guard's adaptive plan according to the social change, it was enumerated like the mentioned above. It is important for the guard to prepare for the change of era and to build up quality and capacity before anything else.